

# 2019회계연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 - 순 서 -

I. '1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 .....	1
1. 편성 방향 .....	1
2. 총지출 규모 .....	2
3. 주요사업 편성내용 .....	4
II. '1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 내용 .....	14
1. 예산 .....	14
2. 고용보험기금 .....	32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51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62
5. 임금채권보장기금 .....	68
6. 근로복지진흥기금 .....	71



# I. '1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

## 1. 편성 방향

### □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 및 청년 친화적인 취업지원 기반 조성
-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및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 □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 (여성) 출산휴가 급여 사각지대 해소, 육아여건 개선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양립의 근무환경 조성
- (신중년)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재직 중 경력개발과 원활한 전직을 통한 인생3모작 지원
-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및 직업훈련시설 등 고용인프라 확충

### □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및 고용안전망 확충

-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 여력 확충
-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확충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

###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 훈련과정 확대,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강화

### □ 차별없고 안전한 일터 조성

- 노동자 임금보장 강화 및 비정규직 차별개선 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 산재 예방관리 강화 및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장 구축 등 교육 인프라 확충

## 2. 총지출 규모

□ 총지출은 26조 7,163억원으로, '18년 대비 2조 9,130억원(12.2%) 증가

\* 의무지출: ('18) 13조 1,403억원 → ('19) 14조 4,181억원(+1조 2,777억원, 9.7%)

\* 재량지출: ('18) 10조 6,630억원 → ('19) 12조 2,982억원(+1조 6,353억원, 15.3%)

○ 예산은 6조 9,845억원으로, '18년 대비 9,880억원(16.5%) 증가

\* 주요 증액: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4,488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3,892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1,582억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375억원)

○ 기금은 19조 7,318억원으로, '18년 대비 1조 9,250억원(10.8%) 증가

▲ 고용보험기금은 12조 6,849억원으로, 1조 7,626억원 증가(16.1%)

▲ 산재보험기금은 5조 9,769억원으로, 513억원 증가(0.9%)

\* 주요 증액: 구직급여(+10,256억원), 고용창출장려금(+4,796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525억원), 모성보호육아지원(+1,442억원)

### < '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억원, %)

회계·기금별	'18년 예산		'19년 예산 (B)	'18년 대비	
	당초(A)	추경(+)		(B-A)	%
▪ 총지출(a+b)	238,033	4,102	267,163	29,130	12.2
- 예산지출(a)	59,964	640	69,845	9,880	16.5
· 일반회계	58,330	640	68,100	9,770	16.7
· 특별회계	1,634	-	1,745	111	6.8
- 기금지출(b)	178,068	3,463	197,318	19,250	10.8
· 고용보험	109,223	3,413	126,849	17,626	16.1
· 산재보험	59,256	-	59,769	513	0.9
· 장애인	3,673	-	4,788	1,115	30.4
· 임금채권	4,558	-	4,585	27	0.6
· 근로복지	1,359	50	1,328	△31	△2.2
▪ 총계*	415,243	640	416,319	1,076	0.3

\* 총계: 기금전출금, 기금여유자금 등 포함

□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예산은 16조 414억원으로, '18년 대비 20.9% (+2조 7,714억원) 증가

○ 직업훈련은 1조 7,303억원으로 '18년 대비 △790억원(△4.4%) 감소, 고용서비스는 8,989억원으로 '18년 대비 434억원(5.1%) 증가

▸ [직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2,865억원 → 1,921억원, △944억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4,351억원 → 4,147억원, △204억원) 등

▸ [고용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5,029억원 → 3,710억원, △1,319억원)  
고용센터인력지원(659억원 → 727억원, +68억원) 등

○ 고용장려금은 5조 4,652억원으로 '18년 대비 1조 7,424억원(46.8%) 증가, 실업소득지원은 7조 8,917억원으로 '18년 대비 1조 1,132억원(16.4%) 증가

▸ [고용장려금] 모성보호육아지원(1조 3,111억원 → 1조 4,553억원, +1,442억원)  
고용창출장려금(3,926억원 → 8,722억원, +4,796억원)

▸ [실업소득지원] 구직급여(6조 1,572억원 → 7조 1,828억원, +1조 256억원)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

(억원, %)

구 분	'18년 예산 (A)	'19년 예산 (B)	'18년 대비 (B-A)	%
합 계	132,700	160,414	27,714	20.9
▪ 직접일자리	832	256	△576	△69.2
▪ 직업훈련	18,093	17,303	△790	△4.4
▪ 고용서비스	8,555	8,989	434	5.1
▪ 고용장려금	37,228	54,652	17,424	46.8
▪ 창업지원	207	297	90	43.5
▪ 실업소득유지지원	67,785	78,917	11,132	16.4

### 3. 주요사업 편성내용

1

####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 □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

- (구직활동지원금)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졸업 후 2년 이내)을 지원(6개월×50만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19년 1,582억원(8만명, 순증)>
- (취업성공패키지) 미취업 청년(10만명) 대상 단계적·통합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18년 5,029억원(전체 31만명, 청년 16만명) → '19년 3,710억원(전체 22.7만명, 청년 10만명)>  
\* 저소득층(취성패 I 유형, 중·장년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신설(1.4만명, 3개월×30만원)

##### □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및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 시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여 청년 고용 지원  
<'18년 3,417억원(신규 9만명, 추정 포함) → '19년 6,745억원(신규 9.8만명, 지속 9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18년 4,258억원(신규 11만명, 지속 45만명, 추정 포함) → '19년 9,971억원(신규 10만명, 지속 15.5만명)>  
\* (2년형) 청년 300 + 정부 900 + 기업 400 = 1,600만원  
(3년형) 청년 600 + 정부 1,800 + 기업 600 = 3,000만원

##### □ 청년친화적인 취업지원 기반 조성

- (청년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및 지자체별로 청년친화 공간을 통한 청년정책 안내와 취업지원 등이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램 운영 지원(20개소) <'18년(추경) 76억원 → '19년 53억원>
- (해외취업 지원) 해외진출 희망 청년을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 <'18년 526억원(추경 포함) → '19년 560억원>  
\* K-Move 스쿨 3,500명,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1,000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3,400명

## 여 성

## □ 출산휴가 급여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임시·일용·특수고용·자영업자 등)에게 출산급여 지원(3개월×50만원)  
<'19년 375억원(하반기 2.5만명, 순증)>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남성 노동자에게 급여 지원(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 <'19년 203억원(11만명, 순증)>

## □ 노동자의 육아여건 개선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 (육아휴직) 급여 인상(통상임금의 40→50%)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200→250만원) 등 <'18년 9,886억원 → '19년 1조 1,388억원>
-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사용기간 확대, 급여 인상 등 육아기 지속 근로여건 개선 <'18년 232억원 → '19년 349억원>  
\* (사용기간 확대) 1년→2년 (급여인상) 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100%상한 150→200만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확대 등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강화  
<'18년 855억원 → '19년 1,117억원>  
\* (육아휴직등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부여 중소기업 지원금 월 20→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인수인계 기간 2주→2개월 해당 기간 중소기업 지원금 월 60→120만원 등
- (직장 어린이집 확충)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을 지원하는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등 저소득맞벌이 가구 보육지원 강화  
<'18년 163억원(3개소) → '19년 280억원(13개소)>

## □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근무환경 조성

- (고용평등환경 개선) 전국 21개 고용평등상담실에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을 순차적으로 배치('19년 10개소)하고, 영세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지원 확대(300→2,100개소) <'18년 19억원 → '19년 22억원>
- (일·가정양립환경 개선)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 확대(3,000→7,600명) 및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신설('19년 50개 기업) 등  
<'18년 121억원 → '19년 177억원>

## 신 중 년

### □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창출)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 <'19년 80억원(2,500명, 순증)>
-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 퇴직 신중년이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에 업무노하우를 전수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확대 <'18년 86억원(6,470명) → '19년 138억원(10,000명)>
-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 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장려금 지원(월 최대 80만원, 1년간) <'18년 86억원(2,000명) → '19년 273억원(5,000명)>

### □ 신중년 경력개발 및 원활한 전직을 통한 인생3모작 지원

- 폴리텍 대학 신중년 특화캠퍼스(7 → 12개 과정) 및 신중년 특화 훈련과정 확대(300 → 500명) <'18년 7억원 → '19년 13억원>

## 장 애 인

### □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지원고용(2.5→5천명), 및 보조공학기기(0.8→1만점) 지원 확대 <'18년 535억원 → '19년 1,022억원>

\*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치단체와 매칭하는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신설(9.6천명) 및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1.2→3천명)

-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38→60개소)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강화 <'18년 2,111억원 → '19년 2,277억원>

### □ 장애인 직업훈련인프라 확충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기술습득을 지원하는 발달훈련센터(7 → 13개소) 및 기업수요 맞춤형훈련센터 확대(6 → 7개소),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 <'18년 341억원 → '19년 616억원>

### 3

## 일자리 창출여건 조성 및 고용안전망 확충

### □ 노동시간 단축 안착 지원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한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 지원 확대(4.5 → 10.2천명) <'18년 209억원 → '19년 347억원>

###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지원팀 수 확대(675 → 800팀) <'18년 235억원(추경 포함) → '19년 281억원>
- 창업팀 대상 입주·협업 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3 → 6개소) <'18년 16억원 → '19년 33억원>

### □ 실직에 대비한 고용안전망 확충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50 → 60%), 지급기간 연장(+3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구직급여: '18년 6조 1,572억원 → '19년 7조 1,828억원>
-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월 보수 지원 기준을 인상하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월 보수 190 → 210만원 미만) <'18년 8,932억원 → '19년 13,419억원>

### 4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 □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 훈련과정 확대

-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기업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인력 양성과정\* 확대(700 → 1,300명) <'18년 154억원 → '19년 219억원>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 고학력 구직자 대상 폴리텍 대학 하이테크 훈련과정 운영(545 → 775명) 및 산업여건 변화를 반영한 폴리텍 대학 학과 신설·개편\* 추진 <'18년 199억원 → '19년 294억원>

\* 지능형로봇, 스마트자동차 등 학과개편(16개) 및 4차 산업혁명 학과 신설(3개)

-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 신산업·신기술 중심의 고숙련 과정(NCS 6레벨 이상)인 고급훈련 과정 확대(2.9 → 3.3만명) <'18년 43억원 → '19년 50억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을 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고숙련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P-Tech 확대 <'18년 80억원 → '19년 120억원>
-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강화
  -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지원 <'19년 186억원(10.3만명, 순증)>

## 5

### 차별없고 안전한 일터 조성

#### ① 근로조건 개선

- 노동자 임금보장 강화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애로 완화 및 노동자 고용유지 지원 <'18년 2조 9,708억원 → '19년 2조 8,188억원>
    - \* 30인 미만 사업장(원칙)에 대해 월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월 13~15만원 지원(단시간 노동자는 시간비례 지급)
  - (체불임금 지원)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400→1,000만원) 등 체불노동자 생계보호 강화 <'18년 4,100억원 → '19년 4,114억원>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응답)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응자 지원 확대(19→22백명) <'18년 75억원 → '19년 84억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수준 인상(월 최대 80→90만원) 및 지원인원 확대(4.5 → 6천명)
    - \*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지원

## ② 산재예방 및 보상 강화

- (클린사업장 조성)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 지원 확대(8 → 9천 개소)  
<'18년 685억원 → '19년 769억원>
- (예방관리 강화)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고재해 예방 지원 강화  
<'18년 471억원 → '19년 480억원>
  - 고위험 건설현장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확대 (1.6 → 2.3만건)
  - 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확대(3.4 → 3.6천건)
  -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서비스업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지원 및 사고성 재해 예방 강화(2.1 → 2.9만 개소)
- (작업환경 개선) 화학물질 중독성 질환 예방 및 유해작업환경 개선 강화 <'18년 490억원 → '19년 549억원>
  - 전자산업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화학물질 중독성 질환 예방 확대(0.5 → 1만개소)
  -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DB 구축(신규 18만 개소)
- (교육인프라 확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전용실습장 구축 등 안전보건 교육인프라 확충 <'18년 7억원 → '19년 89억원>
- (산재보상) 장기급여 소멸시효 연장(3 → 5년), 소규모사업장 적용 확대 등 산재보험급여 보장성 강화 <'18년 5조 347억원 → '19년 5조 700억원>

□ 재정사업평가 결과, 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

- 성과미흡 또는 집행부진 사업이거나 사업수요·시급성 등을 고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중심으로 감액

<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억원)

사 업 명	'18년 예산 (a)	'19년 예산 (b)	증감액	
			(b-a)	%
직업안정기관운영	338	309	△29	△8.5
사회적기업 육성	299	224	△75	△25.1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246	211	△35	△14.1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319	260	△58	△18.3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2,374	1,755	△619	△26.1
취약계층취업촉진	109	87	△22	△20.2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9	8	△1	△10.1
고용장려금(용자)	425	282	△143	△33.7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50	43	△6	△12.9
고용서비스모니터링	47	43	△3	△6.9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99	356	△43	△10.8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114	1,083	△31	△2.8
세대간상생고용지원	271	156	△115	△42.4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4,351	4,147	△204	△4.7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2,865	1,921	△944	△33.0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205	185	△20	△9.7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52	134	△18	△11.7
일학습병행운영지원	1,317	846	△471	△35.8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용자)	127	-	△127	순감
장년고용안정지원금	774	336	△437	△56.5
체당금조력지원	3	2	△1	△33.8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151	102	△51	△33.8
산재병원지원	222	160	△62	△27.9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148	136	△13	△8.6
산재예방시설용자(용자)	1,228	1,067	△161	△13.1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7	50	△7	△11.7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65	61	△4	△6.3
근로자복지지원	45	20	△25	△56.5
근로복지기금지원	47	42	△5	△10.0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60	35	△25	△41.3
생활안정자금(용자)	900	847	△53	△5.9

1. 신규사업

(단위: 억원)

사업명	'19년 예산	비고
합계	2,168	-
■ 일반회계	2,057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82	·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75	· 저출산 대책 마련에 따른 급여신설
•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 서비스 지원(정보화)	58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머신러닝기반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구축	41	·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개발센터 신축
• 공공고용서비스 국제협력	1	· 공공고용서비스 관련 국제 정책교류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5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균특)	15	·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제주)
■ 고용보험기금	81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81	· 고용위기지역 고용창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	-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2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를 통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3	-
•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13	· 자치단체와 장애인이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2. 완료사업

(단위: 억원)

사업명	'18예산	비고
합계	229	
■ 일반회계	28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28	
■ 고용보험기금	201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74	
•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용자)	127	

**참고 3**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재원	'18예산(A)	'19예산(B)	증감(B-A)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일반	411	543	132	32.1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	1,848	5,740	3,892	210.6
해외취업지원	일반	424	560	136	32.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일반	-	1,582	1,582	순증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일반	678	889	212	31.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일반	8,932	13,419	4,488	50.2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일반	86	218	133	154.9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일반	-	375	375	순증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일반	75	127	52	69.2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일반	8	12	4	43.9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일반	3	16	13	530.0
고용창출장려금	고보	3,926	8,722	4,796	122.2
청년내일채움공제	고보	1,706	4,232	2,525	148.0
전직실업자등능력 개발지원	고보	5,253	5,976	724	13.8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고보	125	199	73	58.7
직업훈련생계비대부(응자)	고보	241	317	76	31.4
구직급여	고보	61,572	71,828	10,256	16.7
조기재취업수당	고보	1,354	2,102	747	55.2
고용안정장려금	고보	1,265	1,584	319	25.3
직장어린이집지원	고보	1,451	1,627	176	12.1
모성보호육아지원	고보	13,111	14,553	1,442	11.0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1,993	2,106	113	5.7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	217	587	371	171.2
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	84	169	85	101.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118	171	53	45.1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	341	616	275	80.6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장애인	7	32	26	394.2
산재보험급여	산재	50,347	50,700	353	0.7
산재보험 시설건립	산재	8	24	17	223.1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산재	99	166	67	67.7
산재예방시설건립	산재	7	89	82	1167.6
신용보증대위변제	근복	136	196	60	44.1

\* 주요증액사업 : '18년 대비 100억원 이상 또는 30%이상 증액된 사업

**참고 4**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개관 및 적립금**

(2017년 기준)

구 분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 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설 치 목 적		실직자 생활안정, 고용촉진	업무상재해보상	임금채불노동자 생활안정	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설치근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초시행		1995년	1964년	1998년	1994년	1991년
운영 기관	징수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급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적용사업장		1인 이상 (221만 개소)	1인 이상 (255만 개소)	좌동	-	부담금: 100인 이상 장려금: 1인 이상
보험가입자 (부담자)		피보험자 (1,296만명) 사업장 (221만 개소)	사업주(255만명)	좌동	-	의무고용 미달 사업주 (민간 29%, 공공 32%)
피보험자 (수혜자)		노동자(1,296만명)	노동자 (1,875만명)	좌동	저소득노동자	사업주, 장애인
보 험 료		보수총액 × 보험료율	좌동	좌동	복권 수익금 분배 비율	부담기초액(고시) × 가산율 × 고용미달인원
보험 료율	산출 방법	30/1000 내에서 정함	보험급여 지급률 (3년 보험급여 지출액 / 3년 보수총액) + 추가지출률 + 부가보험료율	2/1,000 내에서 정함	복권수익금 × 1.86%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의 60% 이상
	계정별 요율	실업급여계정 1.3%(노사 각 5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평균 1.60% (0.7% ~ 28.1%)	0.06%	복권수익금 × 1.86%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에 고용률별로 가산 <단 미고용시 최저임금 부담>
'18.사업비		109,223억원	53,129억원	4,431억원	1,358억원	3,673억원
'17.연말적립금		102,544억원	138,654억원	9,682억원	1,451억원	8,796억원
'17.적립금비율		실업급여계정 0.9 고안·직능계정 1.4	2.6	2.2	1.1	2.4
법정적립금비율		실업급여 1.5~2배 고용안정·직능 1~1.5배	1.0	1.0	-	-

## II. '1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 내용

### 1. 예산

#### 1) 세입 및 세출 총괄

##### □ 세 입

- 총 수입은 863억원으로 '18년 대비 △6억원(△0.7%) 감액

(단위: 백만원)

내역별	'18예산 (A)	'19예산 (B)	증감(B-A)	
				%
합계	86,917	86,322	△595	△0.7
○ 일반회계	86,714	85,961	△753	△0.9
· 건물대여료	22	-	△22	△100.0
· 기타재산 수입	1,630	776	△854	△52.4
· 과태료 수입	42,998	42,998	-	-
· 위약금 및 가산금	155	274	119	76.8
· 기타경상이전수입	41,900	41,900	-	-
· 기타 수입	9	13	4	44.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3	361	158	77.8
· 기타경상이전수입	203	361	158	77.8

##### □ 세 출

- 총 지출은 6조 9,845억원으로 '18년 대비 9,880억원(16.5%) 증액

(단위: 백만원)

회계별	'18예산 (A)	'19예산 (B)	증감(B-A)	
				%
총지출	5,996,438	6,984,463	988,025	16.5
● 일반회계	5,833,016	6,809,978	976,962	16.7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0,900	76,865	△4,035	△5.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2,522	97,620	15,098	18.3

## 2) 주요 사업별 예산

### ① 노동시장정책 지원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
-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예상되는 고용 효과 분석
- ❖ 노동시장 구조 및 고용노동현안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 수립 지원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8,188억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 ○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8억원

- 고용정책심의회 운영, 자치단체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주요 일자리정책 추진 지원

#### ○ 고용영향평가사업: 48억원

-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 실시, 재정사업과 예산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고용영향 평가

#### ○ 고용노동통계조사: 159억원

- 고용노동정책 수립 시행·평가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각종 통계조사

### < '19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계	2,993,407	2,840,340	△153,067	△5.1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970,769	2,818,824	△151,945	△5.1
○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808	768	△40	△5.0
○ 고용영향평가사업	4,800	4,800	-	-
○ 고용노동통계조사	17,030	15,948	△1,082	△6.4

## ② 청년·여성 사업

- ❖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과 해외진출 등을 지원
- ❖ 여성근로자가 남녀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여 여성고용 확대를 지원

### ○ 해외취업지원: 560억원

- 해외 진출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실시,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

\* K-Move 스쿨: ('18년) 3,200명 → ('19년) 3,500명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18년) 600명 → ('19년) 1,000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8년) 2,500명 → ('19년) 3,400명

###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60억원

-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 및 일경험 확대 등 학교-노동시장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 대학일자리센터 100개소, 중소기업 탐방 1만명 지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등 ('18년 고보 → '19년 일반회계 이관)

###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5,740억원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이상 장기근속시 자산형성 지원

\* (2년형) 청년 300 + 정부 900 + 기업 400 = 1,600만원  
(3년형) 청년 600 + 정부 1,800 + 기업 600 = 3,000만원  
\* ('18년) 11만명 → ('19년) 신규 10만명 + 지속 15.5만명('19년 지속분)

### ○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211억원

- 기업 및 대학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계

\* ('18년) 7,650명 → ('19년) 6,987명

### ○ 한국잡월드운영: 212억원

- 한국잡월드 운영을 위한 출연금(총지출 359억원-자체수입 148억원)

\* (사업비) 숙련기술전수체험관 건축비 43억원, 전시체험콘텐츠 개발비 34억원, 전시체험관 운영위탁비 135억원 등

### ○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 총사업비 국비보조금 중 잔여사업비 80억원은 2020년 반영

○ **청년센터 운영: 53억원**

- 청년친화적인 청년정책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청년일자리 사업 등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
  - \* 온라인 ('18년) 24억원 → ('19년) 28억원
  - \* 오프라인 ('18년) 군산·통영 52억원(설치비) → ('19년) 전국 16개소 20억원(프로그램비 등)
  - \* 직업진로설계 역량강화(국민참여예산) ('19년) 전국 4개소 4.8억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82억원(신규)**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
  - \* 참여자 수당 1,546억원(기본수당 8만명 1,520억원, 취업성공금 51백명 26억원), 기타 운영비 등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2억원**

-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운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지원 등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사업 운영 등 지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75억원(신규)**

- 임시·일용·특수고용·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급여 지원(3개월x50만원, 하반기 2.5만명)

**< '19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b>계</b>	<b>284,769</b>	<b>901,493</b>	<b>616,724</b>	<b>216.6</b>
○ 해외취업지원	42,437	56,002	13,565	32.0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sup>1)</sup>	-	26,041	26,041	순증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sup>2)</sup>	2,811	-	△2,811	순감
○ 청년내일채움공제	184,820	573,975	389,155	210.6
○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24,579	21,121	△3,458	△14.1
○ 한국잡월드운영	19,253	21,180	1,927	10.0
○ 호남권 직업체험센터건립	9,000	-	△9,000	△100.0
○ 청년센터 운영 <sup>3)</sup>	-	5,266	5,266	순증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158,186	158,186	순증
○ 고용평등환경개선	1,869	2,222	353	18.9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37,500	37,500	순증

1)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18년 31,886백만원)

2) '16년 사업종료, 기참여자 잔여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역으로 통합

3) '18년 추경 신규사업(7,639백만원)

### ③ 고용서비스 사업

- ❖ 새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과도출을 위한 공공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 실직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

####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710억원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상담-훈련-알선」에 이르는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 \* 사업규모: ('18년) 31.1만명 → ('19년) 22.7만명(△8.4만명)  
↳ 패키지 I(저소득층) 10.7만명, 패키지 II(청년·중장년층) 12만명
-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35세 이상) 신설 : 1.4만명, 123억원

#### ○ 취약계층취업촉진: 87억원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간 연계·보완

#### ○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인공지능 고용서비스 지원: 58억원(신규)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직무중심 일자리매칭시스템을 구축, 전 생애에 걸쳐 상황별·고용형태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23억원), ▲인공지능기술 적용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29억원), ▲데이터사전 구축을 위한 온톨로지센터 운영(5.4억원)

####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 41억원(신규)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를 구축, 국가기반시설 및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토지매입비 34.5억원, 설계비 6.6억원)
- \* 국가기반시설 : 고용보험전산망  
정보통신기반시설 : 고용보험전산망, 고용안정전산망,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

#### ○ 공공고용서비스 국제협력: 1억원(신규)

- WAPES(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의회), 정부 등의 국제협력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급변하는 고용노동분야 국제환경에 대응

○ **직업안정기관운영: 309억원**

- 취업지원,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 지원

○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 276억원**

- 한국고용정보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인건비(394명, 240억원) 및 기관운영비(36억원)\*를 통합편성·지원

\* 고용보험기금 운영비에서 이관(이관 전 사업명: 한국고용정보원운영)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3,419억원**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자 부담 경감 및 미가입자의 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18년) 월 소득 190만원 미만 → ('19년) 월 소득 210만원 미만

○ **실업크레딧 지원: 216억원**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

\* 본인부담 25%, 일반회계 25% 및 고보기금 25%(고용부), 국민연금 25%(복지부)

**< '19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b>계</b>	<b>1,471,683</b>	<b>1,811,684</b>	<b>340,001</b>	<b>23.1</b>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502,943	370,960	△ 131,983	△ 26.2
○ 취약계층취업촉진*	-	8,700	8,700	순증
○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인공지능 고용서비스 지원(신규)	-	5,815	5,815	순증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신규)	-	4,117	4,117	순증
○ 공공고용서비스 국제협력	-	100	100	순증
○ 직업안정기관운영	33,768	30,881	△ 2,887	△ 8.5
○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	21,260	27,609	6,349	29.9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93,179	1,341,932	448,753	50.2
○ 실업크레딧(일반)	20,533	21,570	1,037	5.1

\*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18년 10,883백만원)

#### ④ 직업능력개발 사업

- ❖ 고용보험 미가입 신규 실업자, 프리랜서, 취약계층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 ❖ 국가기술자격 검정지원, 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 시설 확충 등 실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인프라 마련

##### ○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 9억원

- 고용보험 미적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

#####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889억원

-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 ②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제공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신설 ('19년 186억원, 10.3만명)

#####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268억원

- 자격검정 사업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비용 지원

\* 국제교류협력사업(9억원), 자격검정사업(948억원), 외국인고용관리사업(172억원), HRD확산 및 역량강화(81억원), 예비비(21억원), 경상운영비(1,028억원) 및 자체수입(△991억원)

#####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41억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 지원

#####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1,755억원

- 인력개발 및 시설확충 등 한국폴리텍대학 운영비용 지원

\* 인력개발사업(257억원), 시설확충사업(345억원), 정보전산화사업비(40억원), 다습학교(19억원), 경상운영비(1,448억원) 및 자체수입(△353억원)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 210억원**

- BTL 사업 정부지급금

\* 17개 캠퍼스 임차료 145억원, 운영비 65억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465억원**

- 노후건축설비개보수, 교육시설증축 및 리모델링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비용 지원

\* 시설확충 및 개보수사업(123억원), 고용노동연수원사업(35억원), 대학정보화사업(12억원), 연구학생지원비(27억원), 기관운영비(492억원) 및 자체수입(△223억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 36억원**

- 기숙사 및 공학관에 대한 BTL사업 정부지급금

\* 임차료(27억원) 및 운영비(9억원)

○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 550억원**

- 우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실천공학기술자 등 직업능력개발 전문가의 안정적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

\* 직업훈련교원및HRD담당자양성(215억원), 직업훈련교원재·향상연수(192억원),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143억원)

※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양성: 13억원**

- 특성화고(직업교육, 8개 학과)와 신산업분야 민간훈련기관(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체계적 교육·훈련 과정 마련 ('18~'19년 학과개편 및 시범과정 운영 → '20년 과정 운영)

※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 '19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b>계</b>	496,841	523,667	26,826	5.4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67,780	88,946	21,166	31.2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12,595	126,772	14,177	12.6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3,733	4,058	325	8.7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237,430	175,529	△61,901	△26.1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21,536	21,047	△489	△2.3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49,256	46,517	△2,739	△5.6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3,638	3,638	-	-
○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	55,007	55,007	순증
○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873	873	-	-
○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양성	-	1,280	1,280	순증

## 5 장년 및 사회적기업 사업

-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신중년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 활용을 통한 신중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 대상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218억원(총 지원인원 12,500명)

- 퇴직 이후 신중년이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 신중년 경력활용형 지역서비스 일자리 신설(2,500명), 기존 사회공헌형 지원 확대 및 지원수준 상향(6,500→10,000명 / 식비 5천원→6천원)

### ○ 중장년층취업지원: 229억원

- 중장년일자리지원기관(고령자인재은행 38억원 43개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68억원 32개소) 운영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지원(19억원 25천명)

### ○ 사회적기업육성<일반회계>: 224억원

- \*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홍보·마케팅 분야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1,200개소)

### ○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543억원

- \* 창업팀 물량 확대(675팀→800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3→6개소)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2차 구축(20억원),

### ○ 사회적기업 육성<균특회계>: 903억원 (일자리창출 7,409명, 사회보험료 6,452명)

## < '19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계	156,446	211,681	55,235	35.3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8,559	21,821	13,262	154.9
○ 중장년층 취업지원 <sup>1)</sup>	-	22,911	22,911	순증
○ 사회적기업육성<일반회계>	29,850	22,352	△7,498	△25.1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41,113	54,306	13,193	32.1
○ 사회적기업육성<균특회계> <sup>2)</sup>	-	90,291	90,291	순증
○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생활)	72,608	-	△72,608	순감
○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 세종)	809	-	△809	순감
○ 사회적기업육성(특행)	3,507	-	△3,507	순감

1) 고용보험기금에서 이관

2) '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3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통합

## ⑥ 노사정책 사업

❖ 노사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반 마련

###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127억원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관련 비영리법인의 노사공동 이익증진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지원
  - \*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전국단위 산별노조, 2개 이상 중소노조의 공동사업 등
-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노사협력체제 및 체계적 노사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관련 홍보 등

###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19억원

-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노민정협의체를 통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지원

### ○ 노사발전재단지원: 92억원

- 노사발전재단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사관계 교육, 노동분야 국제교류, 노사파트너십 증진, 차별개선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 등 지원

### < '19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계	18,340	23,899	5,559	30.3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7,517	12,717	5,200	69.2
○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1,934	1,934	-	-
○ 노사발전재단 지원	8,889	9,248	359	4.0

## 7] 근로조건 보호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장시간근로·차별 등 사업장 근로 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근로감독 역량 강화·인프라 구축 추진

### ○ 근로조건개선지원: 117억원

-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을 통해 임금 체불 등 신고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연소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취약근로자 지원 및 인식확산 추진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 유도를 위해 노무관리 전문가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해 현장의 근로 시간 운용 실태조사 및 장시간근로 개선 모델 개발·확산 등 추진

###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11억원

-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및 법·제도 개선

### ○ 근로감독역량강화: 115억원

-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근로기준법제 개선 연구, 감독관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감독지원 인프라 확충

### ○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8억원

-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확산에 필요한 교육·홍보·연구센터위탁 운영, 제도개선 등

### ○ 공공부문 고용개선지원: 11억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양극화 해소

## < '19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계	23,241	26,274	3,033	13.1
○ 근로조건개선지원	10,289	11,734	1,445	14.0
○ 고용상차별개선지원	1,092	1,092	-	-
○ 근로감독역량강화	9,806	11,488	1,682	17.2
○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	934	840	△94	△10.1
○ 공공부문 고용개선지원	1,120	1,120	-	-

## 8] 산업재해예방사업

❖ 진폐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건강진단 등을 통해 광산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 ○ 진폐위로금 지급: 740억원

-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해 및 유족위로금,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1,040일(1급)~215일(13급)분 지급

### ○ 건강진단: 17억원

- 광산업 종사 및 이직근로자에 대한 1,2차 진폐건강진단 비용 지원

### ○ 건강진단지원금: 12억원

- 건강진단 부대비용 (4.8억원), 기본경비(6.8억원) 등 진폐예방사업 추진 경비

### < '19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계	80,900	76,865	△4,035	△5.0
○ 진폐위로금 지급	78,244	74,034	△4,210	△5.4
○ 건강진단	1,440	1,666	226	15.7
○ 건강진단지원금	1,216	1,165	△51	△4.2

## 9] 국제협력사업

- ❖ ILO 핵심협약 비준,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FTA 협상 참여 및 주요 FTA 발효에 따른 이행체제 구축
-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교류협력 등 한국의 발전경험을 제공하여 수원국의 자립성장 및 사회발전에 기여
-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 ILO 분담금: 의무 분담금 87억원

○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6억원

- 한·OECD 협력지원(0.7억원),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 교류(0.7억원), ILO핵심협약 비준(1.1억원), 고용노동 통상협상 대책 추진(3.5억원)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64.8억원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49.4억원),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 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1.1억원), 한·ILO 협력사업(14.3억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28억원

- 외국인취업자관리(9.4억원), 외국인력상담센터운영(18.6억원)

### < '19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계	17,589	18,515	926	5.3
○ ILO 분담금(ODA)	9,038	8,650	△388	△4.3
○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700	592	△108	△15.4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ODA)	5,355	6,480	1,125	21.0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2,496	2,793	297	11.9

## 10 고용노동행정지원

- ❖ 본부, 지방관서 및 위원회 운영과 업무환경개선 등
- ❖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비용 지원

### ○ 청·관사 유지 및 시설관리: 102억원

- 지방관서 청·관사 보증금 및 임차비용, 청사 유지보수 등

### ○ 고용노동행정역량강화 및 행정정보화 지원: 190억원

-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12억원) 및 정보화(178억원) 등

### ○ 고용노동정책연구개발: 8억원

- 정책대안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사업

### ○ 노동위원회 운영: 88.6억원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47.6억원), 청사관리(19억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6억원), 정보화 운영(15.9억원)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41억원

- 회의체 운영비(17억원), 사무처 운영 및 인건비(19억원), 청사추가 임차(5억원)

### ○ 고객상담센터 운영: 32억원

- 고객상담센터 운영비(9억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23억원)

### ○ 제주도 이관업무 지원(균특회계): 73억원

- 직업안정기관 운영(9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12억원), 직업훈련(5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신규 15억원), 제주노동위원회지원(12억원), 제주 고용센터업무지원(21억원)

### < '19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증 감 (B-A)	%
계	52,610	58,506	5,896	11.2
○ 정책연구개발	776	776	-	-
○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825	1,187	362	43.9
○ 고용노동행정(정보화)	14,224	17,797	3,573	25.1
○ 노동위원회청사관리	1,724	1,899	175	10.1
○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8,996	10,224	1,228	13.7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4,479	4,762	283	6.3
○ 무료법률서비스지원	514	600	86	16.7
○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253	1,594	1,341	530.0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	3,332	4,126	794	23.8
○ 일자리위원회운영	5,231	4,975	△256	△4.9
○ 고객상담센터 운영	3,151	3,237	86	2.7
○ 자치단체 이관 사업 지원(균특)	9,105	7,329	△1,776	△19.5

## 11 정부 내부 거래

❖ 고용보험사업,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위한 기금전출금

○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1,402억원

- 고용보험사업 관리·운영비용 지원(고용보험운영 등): 2억원
-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지원(모성보호지원): 1,400억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의 전출금: 155억원

- 산재보험사업 운영비용 지원: 63억원
- 산재예방사업 소요경비 지원: 92억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의 전출금: 0.8억원

### < '19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계	105,782	155,782	50,000	47.3
○고용보험기금 전출(고용보험운영)	200	200	-	-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90,000	140,000	50,000	55.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산재보험운영)	6,300	6,300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산재예방사업)	9,200	9,200	-	-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 운영)	82	82	-	-

## 2. 고용보험기금

### 1) 수입 및 지출 총괄

#### □ 수입

○ '19년도 순수입은 12조 2,573억원

(단위: 억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총 계	172,695	170,659	△ 2,036	△ 1.2
□ 순수입	131,765	122,573	△ 9,192	△ 7.0
○ 고용보험료	124,184	116,154	△ 8,030	△ 6.5
○ 이자·융자회수 등	6,679	5,017	△ 1,662	△ 24.9
○ 일반회계 전입금	902	1,402	500	55.4
□ 여유자금회수	40,930	48,086	7,156	17.5

#### □ 지출

○ '19년도 총지출은 12조 6,849억원

- (실업급여계정) 8조 9,640억원(구직급여 7조 1,828억원, 모성보호육아지원 1조 4,553억원, '18년 대비 16.1% 증가)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저출산 대책 등 반영

- (고안·직능계정) 3조 7,149억원('18년 대비 16.2% 증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745억원(신규 9.8만명, 지속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4,232억원(신규 10만명, 지속 15.5만명) 등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등 반영

(단위 : 억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172,695	170,659	△ 2,036	△ 1.2
□ 총지출	109,223	126,849	17,626	16.1
○ 고용창출및훈련	27,849	33,307	5,458	19.6
○ 고용안전망확충	63,164	74,186	11,022	17.4
○ 고용평등증진	17,089	18,361	1,272	7.4
○ 고용노동행정지원	1,121	995	△ 126	△ 11.2
□ 여유자금 운영	63,472	43,810	△ 19,662	△ 31.0

## 2) 주요 사업별 예산

### ① 일자리 안전망 강화

- ❖ 실직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등 지원
- ❖ 실업자의 노후소득보장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 구직급여: 7조 1,828억원

-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자\*에게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지급('19. 7월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 전제)

\* 수급 충족요건: 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필요

#### ○ 조기재취업수당: 2,102억원

- 구직급여 수급 중에 조기 재취업한 경우 잔여급여액의 일부 지급

\* (지급요건) 대기기간 경과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 잔여 구직급여의 1/2 지급

#### ○ 광역구직활동지원금: 3억원

- 광역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훈련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실비 지급

#### ○ 자영업자 실업급여: 41억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자에게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간 지급('19. 7월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 전제)

\*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후 고용보험법령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폐업

○ 실업크레딧 지원: 213억원

-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급여 수급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1/4 지원('16.8.1.부터 시행중)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6,316,387	7,418,579	1,102,192	17.4
○ 구직급여	6,157,196	7,182,783	1,025,587	16.7
○ 조기재취업수당	135,429	210,168	74,739	55.2
○ 광역구직활동지원금	267	265	△2	△0.7
○ 자영업자 실업급여	3,272	4,103	831	25.4
○ 실업크레딧 지원	20,223	21,260	1,037	5.1

## ② 고용창출 지원

- ❖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
- ❖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고용 창출을 지원하여 고용의 질 향상 및 노동시장의 고용창출력 제고

### ○ 고용창출장려금: 8,722억원

- 취업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장년 고용,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의 국내복귀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 '16년까지 각 세부(내역)사업으로 운영 → '17년부터 단일 세부사업(고용창출 장려금)으로 통합(개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17년 추경으로 신규 반영

####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인원 및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천명)

구 분	'18년 계획		'19년 계획		비 고
	지원 인원	금액 (추경)	지원 인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	101 (148)	392,616 (549,410)	238	872,217	
(내역) 고용창출장려금	56 (58)	196,315 (204,447)	50	196,208	
① 고용촉진장려금	37 (39)	124,502 (132,634)	29	113,503	○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취업취약계층 선별지원 강화 * ('18년) 37천명 → ('19년) 29천명
②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6	20,520	5	17,626	○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 '19년 우선지원기업 간접노무비 추가지급(10만원), 대규모기업 지원금 인상(30만원→60만원) * ('18년) 6천명 → ('19년) 4.8천명
③ 장년고용지원	8	26,784	5	28,360	○ 장년 미취업자 채용시 장려금 지원 - 장년인턴 잔사업비 반영 * ('18년) 6천명→('19년) 185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확대 * ('18년) 2천명→('19년) 5천명

구 분	'18년 계획		'19년 계획		비 고
	지원 인원	금액 (추경)	지원 인원	금액	
④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4	20,881	10	34,746	○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신규채용시 장려금 지원 -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추가(6.6천명) 반영 * ('18년) 4.5천명→('19년) 10.2천명
⑤ 전문인력 및 지역성장산업지원	1	3,628	1	1,973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인력 고용시, 성장유망업종 및 지역 특화산업의 기업이 신규채용시 장려금 지원('17년 사업 종료) * ('18년) 0.9천명→('19년) 0.6천명 ○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계속 지원
(내역)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45 (90)	192,000 (339,662)	188 (신규 98 지속 90)	673,508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시 장려금 지원 * ('18년) 신규 9만→('19년) 신규 9.8만

\* 내역별 예산은 운영비 제외(합계에는 포함)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83억원

- 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을 설계·제안하고, 고용부가 공모로 선정·지원
- 신중년·여성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집중  
\* 자치단체(광역, 기초) 지원 795억원 편성
- 아울러, '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7개)에 따라, '19년 중 해당 지역을 포함한 5개 권역 일자리사업 지원 지속 \* 고용위기지역 지원 110억원 편성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81억원(신규)

- 고용위기 지역에서 사업장 신설·이전·증설을 유도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고용창출 활성화 지원

### ○ 고용장려금(융자): 282억원

- 기업이 여성·고령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근로시간단축 등 고용환경 등에 필요한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16)고용환경개선지원융자·일자리설비투자융자 → ('17)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융자 → ('18~)고용장려금융자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6→3개소,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융자 '19년 이후 사업 종료  
\* 현안사업 증액(노동시간현장 안착을 위한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및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융자 재원 이관(고용보험기금 → 장애인고용기금)

○ 세대간상생고용지원('18년 종료): 156억원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 지원('19년 잔여사업비 반영)

\*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1인당 연 1,080만원 지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계획(B)	'19계획(B)	증 감	
			(B-A)	%
계	598,723	1,032,348	433,625	72.4
○ 고용창출장려금	392,616	872,217	479,601	122.2
○ 세대간상생고용지원	27,087	15,590	△11,497	△42.4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11,423	108,300	△3,123	△2.8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8,053	8,053	순증
○ 고용장려금(용자)	42,511	28,188	△14,323	△33.7
○ 중장년층취업지원	25,086	-	△25,086	순감

\* 중장년층취업지원 '19년 일반회계로 이관 편성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9년 신규 편성

### ③ 고용유지·안정 지원

- ❖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친화적 일자리 개편시 일자리의 질 제고 지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도모
- ❖ 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 고용유지지원금: 388억원

-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 고용위기지역: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지정기간: '18.4.5~'19.4.4), 영암군, 목포시 ('18.5.4~'19.5.3)

####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336억원

- 중장년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근로시간단축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

\*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요건을 확대(근로시간 단축사유: 사업주 경영방침 → 질병·간병 등 개인사유 포함)하여 근로자 소득보전 및 사업주 노무비용 지원

#### ○ 일터혁신컨설팅지원: 142억원

- 노동조건 향상 및 사업장 생산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문컨설팅과 노사가 상생하는 양질의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 전문컨설팅 지원 계속: ('18년) 1,500건<추경450건> → ('19년) 1,190건  
↳ 전문컨설팅 분야: ①근로시간 단축, ②인적자원 관리, ③인적자원개발

\*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예산: ('18년) 8억원 → ('19년) 16억원

○ 고용안정장려금: 1,584억원

-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또는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
  - \*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23천명 → 25천명
  -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확대: 3,000명 → 7,600명
  - \*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확대(6→17개소), 인식개선 홍보 강화 7억원 증액
- 기간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 \* 지원인원 확대(4.5→6.0천명) 및 간접노무비 인상(20만원 → 30만원)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내역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18년		'19년안		비고
	지원인원	금액	지원인원	금액	
고용안정장려금	34,292	126,479	44,345	158,421	
①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3,150	10,751	5,900	10,950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2,750명, 지원단가 및 지원기간 반영
②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23,368	85,516	24,832	111,659	○ 육아휴직 등 활성화에 따라 지원인원 확대(23,368 → 24,832명)(증 26,143백만원)
③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3,300	12,071	7,600	17,671	○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확대(3,000→7,600명)(증 4,800백만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축소(100→85개소)(감 1,300백만원) ○ 근무혁신 인센티브 신설(증 300백만원),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확대(6→17개소)(증 1,100백만원) ○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증액(증 700백만원)
④정규직 전환 지원	4,474	18,141	6,013	18,141	○ 지원인원은 확대(4.5→6.0천명) ○ 지원단가 및 지원기간 현실화(전년도 집행실적반영 및 간접노무비 증액반영)

○ 모성보호육아지원: 1조 4,553억원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 「저출산대책(7.5)」 이행에 따른 제도개선 반영: ①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②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인상(월 200→250만원), ③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통상임금의 40→50%),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등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출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상한인상(월 160→180만원)

○ 직장어린이집지원: 1,627억원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 직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우선지원 127→135개소, 대기업 385→422개소) 및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141→155개소)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지원(+10개소, 280억원)
- \* 1개소당 지원단가 53억원→40억원, 사업비 연차 반영('19년 280억원, '20년 120억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18억원

-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1,717,372	1,874,827	157,455	9.2
○ 고용유지지원금	33,563	38,763	5,200	15.5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77,379	33,638	△43,741	△56.5
○ 일터혁신컨설팅지원	12,232	14,243	2,011	16.4
○ 고용안정장려금	126,479	158,421	31,942	25.3
○ 모성보호육아지원	1,311,068	1,455,276	144,208	11.0
○ 직장어린이집지원	145,125	162,730	17,605	12.1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1,526	11,756	230	2.0

#### ④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 취업지원 및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 ❖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 청년내일채움공제: 4,232억원

- 인적자원 투자의지가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장기 고용유지 지원

\* 2년형('16.7월~) 청년300만원+정부900만원+기업400만원=2년 1,600만원

\* 3년형('18추경 신설) 청년600만원+정부1,800만원+기업600만원=3년 3,000만원

\* ('18년) 신규 11만명(2년형 9만, 3년형 2만) → ('19년) 신규 10만명(2년형 6만, 3년형 4만)

#####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기 간	부담 주체 <금액> (재원)			자 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청년 <300만원> (자비)	+	기업 <500만원> 中 400만원 적립 (채용유지지원금)	+	국가 <900만원> (취업지원금)	1,600 만원+a (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청년 <600만원> (자비)	+	기업 <750만원> 中 600만원 적립 (채용유지지원금)	+	국가 <1,800만원> (취업지원금)	3,000 만원+a (이자)

##### ○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43억원

- 직업심리검사, 진로상담 매뉴얼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진로지도전문가 양성교육, 청년고용정책 총괄 연구개발 및 모니터링을 위한 허브기능 구축 등을 통해 청년 및 성인의 진로 설계 및 취업지원

\* 직업정보제공 14.7억원, 직업지도 28.4억원(청년정책허브기능 5.2억원 포함)

○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107억원

- 기능향상훈련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에게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여 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70억원

-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의 체류와 근로지원을 위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한국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센터 운영 지원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242,860	445,169	202,309	83.3
○ 청년취업인턴제	7,382	-	△7,382	순감
○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170,640	423,157	252,517	148.0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31,886	-	△31,886	순감
○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4,951	4,311	△640	△12.9
○ 취약계층취업촉진	10,883	-	△10,883	순감
○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10,676	10,676	-	-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6,442	7,025	583	9.0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취약계층취업촉진' '19년 일반회계로 이관

\*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은 '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역으로 편성

## 5] 직업능력개발 지원

- ❖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
- ❖ 훈련과정은 신기술·고숙련 훈련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고졸청년·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 신기술·고숙련 직업훈련 및 인프라 강화

#### ○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5,976억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신기술 직종, 국가적·전략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의 인력을 집중 양성

\* 훈련계획인원 : ('18년) 64천명 → ('19년) 71천명

- (전직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가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계획인원 : ('18년) 125천명 → ('19년) 148천명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선도훈련기관을 통해 장기·고숙련 훈련 실시

\* 훈련계획인원 : ('18년) 0.7천명 → ('19년) 1.3천명

#### ○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4,147억원

-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유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노동자의 생산성·문제해결능력 제고에 기여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훈련계획인원 : ('18년) 2,102,354명 → ('19년) 2,086,926명

##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974,349	1,012,284	37,935	3.9
○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525,264	597,623	72,359	13.8
○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435,108	414,661	△20,447	△4.7
○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	1,280	-	△1,280	순감
○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	12,697	-	△12,697	순감

\*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 '19년 일반회계 이관 편성

\*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 인프라지원 사업과 유사·중복 및 대부수요 지속 감소(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폐지

### □ 공공훈련시설의 기능 확충

#### < 한국 폴리텍대학 >

##### ○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1,264억원

- 폴리텍 신기술 학과 확충, 하이테크 과정 신설 등 유망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하이테크과정 : ('18년) 545명 → ('19년) 775명

- 5060 新 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지속

\* 신중년특화과정 : ('18년) 300명 → (19년) 500명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 직업능력개발 심사 평가: 185억원

-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평가 실시 등 철저한 훈련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하여 훈련 효과성 제고

\* 신규 훈련기관 인증평가 : ('18년) 1,350개소 → ('19년) 1,350개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 134억원

- HRD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현장교수 지원 및 HRD 우수기업 인증 실시

○ 숙련기술장려사업: 292억원

- 최고의 숙련기술을 갖춘 '대한민국 명장',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

\* 대한민국명장(35명)·우수숙련기술인(100명) 선정·지원, 숙련기술체험캠프(42과정) 개최 등 (125억원),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 등(167억원)

○ 외국인력고용지원: 24억원

- 외국인근로자 취업적응지원 및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훈련,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교육 등 실시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231,213	189,951	△41,262	△17.8
○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112,917	126,435	13,518	12.0
○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개발(한기대)	54,765	-	△54,765	순감
○ 직업능력개발 심사 평가	20,542	18,542	△2,000	△9.7
○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 지원	15,158	13,377	△1,781	△11.7
○ 숙련기술장려사업	25,390	29,156	3,766	14.8
○ 외국인력고용지원	2,441	2,441	-	-

\*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개발(한기대) '19년 일반회계 이관 편성

□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근로자능력개발지원: 953억원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45세 이상 근로자 등 직업훈련 취약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 훈련계획인원 : ('18년) 473천명 → ('19년) 525천명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1,921억원

-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훈련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 신중년, 훈련 소외지역 등에 별도 훈련프로그램 보급

\* 공동훈련센터 : ('18년) 335개 → ('19년) 354개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317억원

- 비정규직, 저소득 구직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로 생계비 대부

\* 대부인원 : ('18년) 10,214명 → ('19년) 9,056명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406,008	319,152	△86,856	△21.4
○ 근로자능력개발지원	95,323	95,323	-	-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286,540	192,094	△94,446	△33.0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24,145	31,735	7,590	31.4

□ 실력중심사회 공고화 및 공감대 확산

○ 일학습병행운영지원: 846억원

- 학습근로자가 체계적 현장훈련을 통해 핵심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하며 배우는 훈련 인프라 지원
- 향후 역량있는 기업 발굴 강화, 기업 현장교사 교육확대 등 질적 내실화에 주력

\* 참여기업(누적): ('18년) 12,000개소 → ('19년) 13,000개소

○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380억원

- 로봇, 3D 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NCS 개발·보완
- 블라인드 채용 확산, HRD 컨퍼런스·직업방송 운영 등 직업능력 개발 핵심 인프라에 대한 운영 지원

\* NCS 개발(20직무) 및 개선(100직무), 컨설팅 지원(기업 700개소) 등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169,283	122,586	△46,697	△27.6
○ 일학습병행운영·지원	131,674	84,598	△47,076	△35.8
○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37,609	37,988	379	1.0

## ⑥ 고용서비스 및 고용정책 기반 구축 지원

- ❖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기관 지원 및 고용보험제도 운영
- ❖ 일자리·훈련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노동시장 정보 분석 등을 통해 고용정책 수립 지원

### ○ 고용센터인력지원: 727억원

- 고용센터에서 고용서비스 제공 등 고용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등 지급

### ○ 고용동향조사분석: 47억원

- 취업자, 청년, 고학력자 및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구조, 직업 이동경로 등 고용동향 전반에 관한 통계자료 생산

###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43억원

-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민간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및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등 실시

### ○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199억원

-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 고용보험 등 제도안내 등을 위한 고객지원 센터 운영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 등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19년 기금운영비로부터 이관 편성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변경(정정)·이직확인 등에 관한 관리업무 수행

### ○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149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고용보험 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59억원

- 고용보험 적용·부과고지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고용전산망관리: 356억원

- 고용안정전산망, 고용보험시스템,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 일자리, 직업훈련 등의 고용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망 운영·관리 비용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GOV 적용, 고용서비스 품질관리정보망 구축

○ 고객상담센터지원: 125억원

-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고용센터 전화민원 업무 일부를 위탁 운영

\* 위탁 콜센터(3개소) 상담원 인건비 및 위탁비용 지원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153,971	170,454	16,483	10.7
○ 고용센터인력지원	65,944	72,679	6,735	10.2
○ 고용동향조사분석	4,876	4,672	△204	△4.2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4,669	4,349	△320	△6.9
○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12,507	19,853	7,346	58.7
○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5,913	5,913	순증
○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14,767	14,931	164	1.1
○ 고용전산망관리	39,880	35,592	△4,288	△10.8
○ 고객상담센터지원	11,328	12,465	1,137	10.0

\* 고용보험적용부과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9년 기금 운영비(근로복지공단정보화 경비(정보화)+근로복지공단기타관련지원)로부터 이관 편성

## 7 고용보험사업 운영

❖ 적용·징수 업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및 피보험자 관리, 고용보험 연구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

### ○ 기금운영비(고용보험 적용·징수 및 고용보험사업 운영): 950억원

- 고용보험 적용·징수 위탁에 따른 운영비(686억원)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555억원),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120억원) 등

- 고용보험사업 운영비(264억원)

\* 고용보험기금 내 기금운영, 고용안정·창출사업, 모성보호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기금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 ○ 고용보험연구개발: 39억원

- 노동시장연구센터위탁연구(20억원), 고용보험연구용역(13억원),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연구지원(6억원)

### ○ 자영업자 기금운영비: 6억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홍보(5억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1억원)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112,130	99,517	△12,613	△11.2
○ 기금운영비(일반)	107,613	95,000	△12,613	△11.7
○ 고용보험연구개발	3,946	3,946	-	-
○ 기금운영비(자영업자)	571	571	-	-

\* 근로복지공단정보화경비(정보화) 및 근로복지공단 기타관련지원 '19년 사업비(고용보험적용부과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로 이관 편성

\* 고용보험적용징수위탁사무대행지원 '19년 사업비(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로 이관 편성

\* 고용담당인력전문성확보 '19년 사업비(고용센터인력지원)로 이관 편성

\* 한국고용정보원운영 '19년 일반회계 이관 편성

###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1) 수입 및 지출 총괄

##### □ 수입

- '19년도 순수입은 8조 4,486억원('18년 대비 5.7% 증가)
- 여유자금회수(6조 6,652억원)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15조 1,138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14,957,342	15,113,770	156,428	1.0
□ 순수입	7,992,032	8,448,603	456,571	5.7
○ 산재보험료	7,331,608	7,708,057	376,449	5.1
○ 이자·용자회수 등	644,924	725,046	80,122	12.4
○ 일반회계 전입금	15,500	15,500	-	-
□ 여유자금 회수 등	6,965,310	6,665,167	△300,143	△4.3

##### □ 지출

-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19년도 기금 총지출은 총 5조 9,807억원으로 '18년보다 551억원(0.9%) 증가
-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은 1,013억원(1.1%)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14,957,342	15,113,770	156,428	1.0
□ 총지출	5,925,584	5,980,724	55,140	0.9
○ 산재보험사업	5,207,257	5,240,914	33,657	0.6
○ 산재예방사업	358,161	369,244	11,083	3.1
○ 고용노동행정지원	360,166	370,566	10,400	2.9
□ 여유자금 운용 등	9,031,758	9,133,046	101,288	1.1

## 2) 주요 사업별 예산

### ① 산재보험사업

- ❖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등 보호에 기여
- ❖ 재활서비스 지원강화로 산재노동자 직업·사회복귀 촉진 및 산재병원 인프라 확충 지원

#### < 산재보험급여 >

##### ○ 요양급여: 9,842억원

-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 치료비, 식대 등 지급
- \* ('18년) 285,730명 → ('19년) 243,834명

##### ○ 휴업급여: 1조 1,399억원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 ('18년) 181,050명 → ('19년) 136,192명

##### ○ 장해급여: 1조 8,197억원

-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14급 판정자에게 지급
- \* 연금: 329일분(1급)~138일분(7급), 일시금: 1,474일분(1급)~55일분(14급)
- \* ('18년) 84,085명 → ('19년) 84,210명

##### ○ 유족급여: 6,753억원

- 업무상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
- \* 연금: 평균임금의 52~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 ('18년) 28,501명 → ('19년) 29,481명

##### ○ 간병급여: 554억원

- 치료 종결 후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
- \* '18년 상시간병 1일당 41,170원, 수시 간병 1일당 27,450원
- \* ('18년) 5,557명 → ('19년) 5,365명

○ 상병보상연금: 1,455억원

- 2년 이상 요양중인 폐질등급 제1급~제3급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평균임금 329일분~257일분 지급

\* ('18년) 4,176명 → ('19년) 4,028명

○ 장의비: 311억원

- 업무상 사망에 따른 장례시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18년 최고 15,069천원, 최저 10,763천원

\* ('18년) 2,314명 → ('19년) 2,351명

○ 직업재활급여: 120억원

-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직업훈련비용·수당 및 지원금 지급

\* ('18년) 3,851명 → ('19년) 1,606명

○ 진폐급여: 2,077억원

-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진폐장해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단, 기존 요양중인자는 휴업급여 지급)

\* 기초연금 최저임금 60%, 진폐장해연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2일~11일 지급, 진폐유족연금은 사망전 진폐보상연금 금액(유족보상연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18년) 12,505명 → ('19년)12,793명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 획(B)	'19계 획(B)	증 감	
			(B-A)	%
□ 산재보험급여	5,034,678	5,069,964	35,286	0.7
○ 요양급여	1,044,990	984,213	△60,777	△5.8
○ 휴업급여	1,199,581	1,139,861	△59,720	△5.0
○ 장해급여	1,726,305	1,818,970	92,665	5.4
○ 유족급여	630,382	675,302	44,920	7.1
○ 간병급여	58,371	55,394	△2,977	△5.1
○ 상병보상연금	146,423	145,507	△916	△0.6
○ 장 의 비	28,942	31,095	2,153	7.4
○ 직업재활급여	11,730	11,962	232	2.0
○ 진폐연금	187,954	207,660	19,706	10.5

## <산재근로자 재활 및 의료사업 지원>

###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40억원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78,584명, 544억원)
- 직업훈련 지원(315명, 12억원), 직장복귀 지원(17억원)
- 사회심리재활 지원(7,526명, 25억원)
-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지원(2,400명, 43억원), 맞춤형서비스지원(72억원)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1,216명, 27억원)

### ○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지원: 89억원

- 연구기관지원(2개소, 61억원), 케어센터지원(2개소, 28억원)

### ○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102억원

- 의료기관 평가(3.7억원)
-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12.3억원)
-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및 인프라구축(10.7억원)
- 출퇴근 재해 보호지원(75.3억원)

### ○ 산재병원 지원: 160억원

- 산재병원지원(재활전문센터 등 수지차 지원, 88억원)
- 산재병원시설장비지원(의료장비현대화 23억원, 노후안전시설개보수 49억원)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B)	'19계획(B)	증 감	
			(B-A)	%
계	119,674	109,117	△ 10,557	△ 8.8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2,930	74,007	1,077	1.5
○ 연구기관및케어센터지원	9,829	8,900	△ 929	△ 9.5
○ 요양관리	15,082	10,206	△ 4,876	△ 32.3
○ 산재병원 지원	22,198	16,004	△ 6,194	△ 27.9

## <산재보험사업의 위탁운영 지원>

### ○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316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 징수위탁 지원(150억원), 산재보험 적용 부과지원(166억원)\*

\* 보험사무대행지원금(73억원) 기관운영경비('18년)에서 사업비로 이관

### ○ 산재보험시설 건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165억원

- 산재보험시설건립(24억원)
  - \* 영주지사 건립(20억원), 소속기관 개보수(4억원)
- 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구축(141억원)

### ○ 산재보험 위탁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2,305억원

- 근로복지공단 직원 인건비(1,798억원)
-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362억원)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지원(106억원)
- 청사임차보증금 지원(40억원)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B)	'19계획(B)	증 감	
			(B-A)	%
계	293,603	278,807	△ 14,796	△ 5.0
○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23,049	31,675	8,626	37.4
○ 산재보험시설 건립	757	2,446	1,689	223.1
○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	14,266	14,149	△ 117	△ 0.8
○ 산재보험 위탁 운영경비	255,531	230,537	△ 24,994	△ 9.6

## ② 산업재해예방 사업

- ❖ 건설업, 대형사고 등 사고·사망재해예방 역량 강화
- ❖ 전자·서비스업 등 산업재해 취약업종 지원확대
- ❖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안전·보건교육 인프라 확충

###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769억원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750억원

\* 지원금액: 소요비용의 50%~70% / 지원대상사업장수: 9,000개소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수행경비: 19억원

\* 사후관리 위탁수수료, 사업안내 및 홍보, 클린 인정패(서) 제작 등 사업수행경비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68,525	76,855	8,330	12.2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68,525	76,855	8,330	12.2

## <사고성 재해 및 업무상 질병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 ○ 업종별재해예방: 480억원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127억원),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268억원),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32억원),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52억원)
- \* (증액) 서비스업 사고성 재해 예방(21,100→28,500개소, 증 7억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6,000→22,500건, 증 6억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3,400→3,550건, 증 1억원)
- \* (감액)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160→150명, △4억원), 원·하청 통합 통계관리 이관(△1억원)

### ○ 안전인증및안전검사: 60억원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50,630건, 29억원),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5,601건, 19억원),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1,050건, 2억원), 위험기계 기구 안전검사(45,538건, 10억원)

### ○ 유해작업환경개선: 549억원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400억원), 유해작업환경 개선 및 평가(93억원),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56억원)
- \* (증액) 전자산업 등 화학물질 중독성 질환예방(5,000→10,000개소, 증 10억원), 작업환경 실태조사(180,000개소, +59억원)
- \* (감액)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40,000개소, △10억원)

### ○ 근로자건강보호: 227억원

- 근로자건강센터(센터 21개소, 분소 21개소, 148억원), 건강장해 리스크 평가(11,000개소, 22억원),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정도관리(24억원),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29억원), 감정노동자 보호사업(4억원)

###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신규): 2억원(370개소, 순증 2억원)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124,892	131,794	6,902	5.5
○ 업종별재해예방	47,121	47,955	834	1.8
○ 안전인증및안전검사	6,009	6,011	2	0.03
○ 유해작업 환경개선	49,026	54,916	5,890	12.0
○ 근로자건강보호	22,736	22,743	7	0.03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0	169	169	순증

## <안전보건문화정착 및 연구개발>

### ○ 안전보건문화정착: 291억원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158억원), 전문교육과정운영(52,000명, 35억원), 안전보건문화선진화(68억원), 민간재해예방활동지원(30억원)

### ○ 산재예방시설 건립: 89억원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장 구축(59억원)
-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부지매입비(30억원)
- 제천 안전체험교육 콘텐츠 확충 완료소요(△6억원)
- 여수 안전체험교육 타당성 조사비 완료소요(△1억원)

### ○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61억원

- 안전보건연구사업(51과제, 42억원), 국제협력사업(10억원), 산업재해통계(11회, 8억원)

\* (감액) 제 9차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1회, 순감 4억원)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36,264	44,062	7,798	21.5
○ 안전보건문화정착	29,094	29,124	30	0.1
○ 산재예방시설건립	700	8,873	8,173	1,167.6
○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6,470	6,065	△405	△6.3

<산재예방위탁운영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운영비: 1,335억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1,199억원), 기관운영비(127억원), 청사 임차(9억원)

\* 인건비(증원인력 소요 '18년 64명, '19년 72명, '19년 공통인상분), 기관운영 경비(본부 및 산하기관 29개 기관), 청사임차(청사 및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등

○ 유해화학물질체계적관리: 16억원

-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평가연구 및 정보제공

\* 노출기준 설정 평가연구(수시), 유해성위험성 평가연구(수시), 화학물질센터운영 등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50억원

-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완(19억원), 정보화추진역량제고(31억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0.1억원)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135,261	140,182	4,921	3.6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운영비	127,947	133,535	5,588	4.4
○ 유해화학물질체계적관리	1,628	1,628	-	-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5,686	5,019	△667	△11.7

### ③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용자

- ❖ 산재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 도모
- ❖ 유해위험설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지원

#### ○ 생활안정자금 용자: 133억원

- 산재근로자와 가족에게 학자금, 혼례비, 장례비, 요양비 등 대부
  - \*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2,000만원 한도, 연리 2%, 지원대상 1,052명
  - \* 물량: ('18년) 1,052명 → ('19년) 1,052명

####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3억원

- 산재근로자 중 창업희망자에게 점포임대 지원('19년 신규지원중단)
  - \* 1인당 1.5억원 한도, 최장 6년간 연리 2%, 지원대상 0명
  - \* 물량: ('18년) 19명 → ('19년) 0명(기존지원자의 이전계약 및 임대료 상향지원)

#### ○ 산재예방시설용자: 1,067억원

-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설비·기계기구 및 작업환경 개선비용 용자 지원
  - \* (감액) 사고사망재해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업종별 재해예방 등 직접사업 예산 및 건설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확대를 위해 간접지원 예산인 용자예산을 일부 감액조정(재난안전평가 결과 등 반영)(696→605개소, △161억원, △13.1%)
  -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1.5%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137,627	120,217	△ 17,410	△ 12.7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창업점포지원 통합편성)	14,833	13,563	△ 1,270	△ 8.6
○ 산재예방시설용자	122,794	106,654	△ 16,140	△ 13.1

#### ④ 산재보험및예방사업 운영비

- ❖ 기금관리비 및 산재보험·산재예방제도 운영 지원
- ❖ 산재보험 및 예방제도 관련 연구용역

##### ○ 인건비: 19억원

- 기금관리보조요원 및 산업안전정책 전문위원 인건비 등

##### ○ 기타경비: 34억원

- 산재보험기금운용,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기본운영경비 등

##### ○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6억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관련 연구용역비 등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 획(A)	'19계 획(B)	증 감 (B-A)	%
계	5,732	5,890	158	2.8
○ 기금관리비 인건비	117	119	2	1.7
○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137	139	2	1.5
○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1,623	1,652	29	1.8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388	388	-	-
○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622	622	-	-
○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2,248	2,370	122	5.4
○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597	600	3	0.5

##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1) 수입 및 지출 총괄

#### □ 수입

- '19년도 순수입은 6,253억원('18년도 대비 16.2% 증가)
- 여유자금회수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1조 757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8계획(B)	증 감	
			(B-A)	%
계	1,390,450	1,075,704	△314,746	△22.6
□ 순수입	538,106	625,329	87,223	16.2
○ 자체수입	535,256	617,601	82,345	15.4
- 법정부담금	519,867	599,742	79,875	15.4
- 기타재산수입	6,508	8,662	2,154	33.1
- 가산금	759	904	145	19.1
- 기타경상이전수입	8,122	8,293	171	2.1
○ 정부내부수입	2,850	7,728	4,878	171.2
□ 여유자금 회수 등	852,344	450,375	△401,969	△47.2

#### □ 지출

- '19년도 총지출은 4,788억원('18년도 대비 30.4% 증가)
-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3,968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감	
			(B-A)	%
계	1,390,450	1,075,704	△314,746	△22.6
□ 총지출	367,260	478,765	111,505	30.4
○ 경상사업비	308,366	414,233	105,867	34.3
- 장애인고용장려금	199,262	210,560	11,298	5.7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11,790	17,104	5,314	45.1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34,118	61,627	27,509	80.6
- 장애인취업지원 등	63,196	124,942	61,746	97.7
○ 기금운영비	58,894	64,532	5,638	9.6
□ 정부내부지출	150,000	200,135	50,135	33.4
□ 여유자금운용	873,190	396,804	△476,386	△54.6

## 2) 주요 사업별 예산

### 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 지원

#### ○ 장애인고용장려금(연인원 554천명): 2,106억원

-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0~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

\* 장애인고용장려금: ('18년) 552천명, 1,993억원 → ('19년) 554천명, 2,106억원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60개소): 171억원

- 사회적기업형 표준사업장 등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

\* 시설·장비 투자비의 75% 지원<1명 고용창출 시 3,000만원, 10억원 한도>

\* ('18년) 38개소 → ('19년) 60개소

####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587억원

- 근로지원인 지원확대(▲지원인원: 1,200 → 3,000명, ▲지원시간 확대: 월 115 → 125시간)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지원 강화

\* 근로지원인: ('18년) 1,200명, 18,508백만원 → ('19년) 3,000명, 55,477백만원

- 중증장애인의 직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작업지도원 등을 선임·배치하는 경우 월 14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19년 850백만원>

- 장애인 고용 편의시설, 통근용승합차 등 지원<'19년 2,300백만원>

\* 사업주당 3억원(장애인 1인당 1천만원, 중증 1천5백만원) 한도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지원: 115억원

-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 고용유지조건으로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까지 지원

\* ('18년) 8천점 → ('19년) 1만점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241,770	297,922	56,152	23.2
○ 장애인고용장려금	199,262	210,560	11,298	5.7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11,790	17,104	5,314	45.1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1,658	58,727	37,069	171.2
○ 보조공학기기지원	9,060	11,531	2,471	27.3

② 맞춤형 장애인 취업지원

❖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취업지원: 169억원

- 중증장애인을 현장훈련(3~7주) 후 고용하는 지원고용\*, 중증장애인 인턴제(200명) 지원 <('18년) 4,646백만원 → ('19년) 12,751백만원>

\* 지원인원(2.5천명→5천명), 지원기간(평균 33일→ 사전훈련 35일+적응지도 60일), 지원단가는 현 수준 유지

- 장애학생에 대한 체계적 진로상담과 직업체험 기회 제공하는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4.2→5.3천명) <('18년) 1,557백만원 → ('19년) 1,948백만원>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138억원

- 장애인 8,000명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1~2단계 참여수당·취업성공수당 및 저소득층 구직수당 등 지급

\* 참여수당: 1단계 25만원, 2단계 284천원, 취업성공수당: 300/400/800천원, 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 300천원\*3개월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3억원(신규)

- 발달장애인 등 취업의욕 고취에 동료 장애인의 지원이 효과적인 것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자치단체 보조사업(보조율 50%), 9,600명(20만원) 지원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32억원

-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됨('18.5월)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장애인 당사자를 직접 교육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인 감수성 있는 인식개선교육 및 교육효과성 제공(22,500개소) <('19년) 2,470백만원 신설>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23,397	35,208	11,811	50.5
○ 장애인취업지원	8,380	16,876	8,496	101.4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14,365	13,761	△604	△4.2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취업지원	-	1,349	1,349	순증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652	3,222	2,570	394.2

### ③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공공·민간훈련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용자·연구 사업

####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616억원

- 공단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양성훈련 등 훈련과정 지원
- 최근 증가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용훈련센터 확대(7개소→13개소)
  -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18년) 320명, 9,553백만원 → ('19년) 560명, 18,206백만원
- 기업의 훈련수요에 대응위해 맞춤형훈련센터 추가 운영(6개소→7개소)
  - \* 맞춤형훈련센터: ('18년) 376명, 8,669백만원 → ('19년) 676명, 8,018백만원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500명→935명) 및 공공훈련(80명) 지원
  - \* 복지부 직업재활훈련사업 이관: ('18년) 3,400백만원 → (19년) 7,032백만원

####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38억원

- 장애인 기능경기(지방·전국, 발달) 개최 지원
- 국제대회 입상자에 따른 기능장려금 지급

#### ○ 장애인고용연구: 27억원

- 장애인고용연구(29→34과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570백만원) 및 장애인 고용패널조사(583백만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465백만원) 등

####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100억원(신규)

-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고용 및 유지를 위한 생산 라인 조정비용(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이관)

\* 1인당 1억원, 사업주당 15억원(3년거치 5년상환, 이율 1%)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40,647	78,168	37,521	92.3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34,118	61,627	27,509	80.6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3,807	3,819	12	0.3
○ 장애인고용연구	2,722	2,722	-	-
○ 장애인고용증진용자	-	10,000	10,000	순증

#### ④ 장애인고용정보화 지원 및 기금관리 운용 지원

- 장애인고용정보화 지원: 29억원
  - 장애인고용전산망 및 전산장비 등의 관리·운영
-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645억원
  - 공단 인건비 지원: 473억원 → 528억원(+55억원)
  - 부담금 징수 및 장려금 지급 등 기본사업 수행 경비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61,446	67,467	6,021	9.8
○ 장애인고용정보화	2,552	2,935	383	15.0
○ 기금관리(운영비)	58,894	64,532	5,638	9.6

## 5. 임금채권보장기금

### 1) 수입 및 지출 총괄

#### □ 수입

○ '19년도 순수입은 5,005억원('18년 보다 3.7% 증가)

- 여유자금 회수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8,769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B)	'19계획(B)	증 감	
			(B-A)	%
총 계	1,448,514	876,900	△571,614	△39.5
□ 순수입	482,903	500,540	17,637	3.7
○ 사업주부담금	320,285	334,584	14,299	4.5
○ 변제금·이자·공탁금 회수 등	162,536	165,874	3,338	2.1
○ 일반회계전입금	82	82	-	-
□ 여유자금 회수	965,611	376,360	△589,251	△61.0

#### □ 지출

○ '19년도 총지출은 4,585억원('18년 보다 0.6% 증가)

-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4,184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총 계	1,448,514	876,900	△571,614	△39.5
□ 총지출	455,838	458,519	2,681	0.6
○ 체당금 지급	409,956	411,423	1,467	0.4
○ 무료법률구조지원	25,384	25,384	-	-
○ 체당금조력지원	284	188	△96	△33.8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용자	7,463	8,392	929	12.4
○ 임채기금 운영비	12,751	13,132	381	3.0
□ 여유자금 운용	992,676	418,381	△574,295	△57.9

## 2) 주요 사업별 예산

- ❖ 퇴직근로자의 체불 임금·휴업수당·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당금 조력비용 지원**
- ❖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 ○ 퇴직근로자 체당금 지급: 4,114억원

- (일반체당금)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른 월 상한액을 설정)

\* 지급규모: ('18년) 41,088명 → ('19년) 38,169명 (△ 2,919명)

- (소액체당금) 기업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근로자가 체불금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

\* 소액체당금 상한액: ('18년) 400만원 → ('19.7.1) 1,000만원 (증 600만원)

\* 지급규모: ('18년) 56,108명 → ('19년) 55,371명 (△ 737명)

### ○ 무료법률 구조사업 소요비용 출연: 254억원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 임금체불관련 소송(민사, 소액심판, 보존, 강제집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일체

↳ 변호사 비용: 113,849원(건당), 소송비용: 155,483원(건당)

\* ('18년) 94,247건 → ('19년) 94,247건

○ **체당금 조력지원: 1.9억원**

- 10명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액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도산등사실불인정 45만원,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 근로자 1인당 6만원

\* ('18년) 260건 → ('19년) 174건 (△86건)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융자: 84억원**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 융자금액: 원칙적으로 근로자 체불금액만큼 융자하되,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7천만원까지 융자

↳ 이자율: 담보제공여부에 따라 2.2~3.7%, 1년 거치 2년간 분기별 상환

\* ('18년) 1,964명 → ('19년) 2,208명 (증 244명)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443,087	445,387	2,300	0.5
○ 체당금 지급	409,956	411,423	1,467	0.4
○ 무료법률구조 지원	25,384	25,384	-	-
○ 체당금조력지원	284	188	△96	△33.8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7,463	8,392	929	12.4

## 6. 근로복지진흥기금

### 1) 수입 및 지출 총괄

#### □ 수입

- '19년도 순수입은 2,295억원('18년 대비 29.5%)
  - 여유자금 회수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3,594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감	
			(B-A)	%
합 계	356,289	359,394	3,105	0.9
□ 순수입	177,268	229,513	52,245	29.5
○ 융자금 회수	102,980	98,518	△4,462	△4.3
○ 재산수입	11,948	6,814	△5,134	△43.0
○ 경상이전수입 및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5,634	15,607	△27	△0.2
○ 정부내부수입	46,706	108,574	61,868	132.5
□ 여유자금 회수	179,021	129,881	△49,140	△27.4

#### □ 지출

- '19년도 총지출은 1,328억원 ('18년 대비 △2.2%)
  -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1,505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감	
			(B-A)	%
계	356,289	359,394	3,105	0.9
□ 총지출	135,855	132,801	△3,054	△2.2
○ 사업비	122,238	117,625	△4,613	△3.8
○ 기금운영비	13,610	15,172	1,562	11.5
○ 차입금 이자상환	7	4	△3	△42.9
□ 정부내부지출	55,150	76,100	20,950	38.0
○ 공자기금 예탁	50,000	60,000	10,000	20.0
○ 계정간 전출	5,150	11,871	6,721	130.5
○ 복권기금 반환	0	4,229	4,229	순증
□ 여유자금운용 등	165,284	150,493	△14,791	△8.9
○ 차입금 원금상환	79	85	6	7.6
○ 여유자금 운용	165,205	150,408	△14,797	△9.0

## 2) 주요 사업별 예산

### ① 노동자 복지사업

- ❖ 임금체불 및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용자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과 생계안정 도모
- ❖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 ❖ 중소기업의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 등을 통한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 완화

#### ○ 생활안정자금(용자): 847억원

- 저소득노동자 및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자녀학자금, 혼례비, 장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용자

\* ('18년) 14,371명 → ('19년) 11,481명

#### ○ 근로자복지지원: 20억원

- 문화예술제(5억원): 4개 분야(미술·음악·연극·미술) 예술제 개최
- 기업복지활성화지원(15억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제공 및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컨설팅

\* 개인상담: ('18년) 10,000건 → ('19년) 13,212건

#### ○ 퇴직연금 사업운영: 36억원

- 소규모사업장 취약 근로계층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 계약형퇴직연금제도(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50인 이하)

#### ○ 근로복지기금 지원: 42억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협력업체 노동자 대상 복지 사업을 시행한 경우, 중소기업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재정지원

○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35억원

- 근로복지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한 저소득 노동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지원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108,667	98,028	△ 10,639	△ 9.8
○ 생활안정자금(용자)	90,000	84,729	△ 5,271	△ 5.9
○ 근로자복지지원	4,493	1,954	△ 2,539	△ 56.5
○ 퇴직연금사업운영	3,490	3,602	112	3.2
○ 근로복지기금 지원	4,692	4,223	△ 469	△ 10.0
○ 근로복지정보시스템 (정보화)	5,992	3,520	△ 2,472	△ 41.3

## ② 신용보증 사업

❖ 보증·담보여력이 없는 노동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정책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활안정지원

### ○ 신용보증대위변제: 196억원

- 고용노동부 실시 정책자금 융자 대상자 중 신용보증 신청하는 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이내 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 근복지금(생활안정자금(융자)), 고보기금(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기금(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A)	'19계획(B)	증 감 (B-A)	
				%
계	13,571	19,597	6,026	44.4
○ 신용보증대위변제	13,571	19,597	6,026	44.4